

1. 개정 이유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 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5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령은 물류단지 안에 있는 준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재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준치시설의 가치나 용도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타 시설부담금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용도별 가중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법정 과징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비하고, 물류창고업 과징금 규정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9조 및 별표 1)
- 나.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존치시설의 용도별 가중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안 제3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 다.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34조제5항 단서)
- 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천만원”을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의9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34조제5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에 준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액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36조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및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법 제21조의9”를 각각 “법 제2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7호) 중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를 “법 제21조의9”로 한다.

3.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법 제21조의9”를 각각 “법
제2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5
호) 중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를 “법 제21조의9”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를 “제1호
및 제2호, 제3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 제4호 및 제5호, 제6
호”로, “제10호”를 “제9호”로, “제10호의2”를 “제10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발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제1항 관련)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1,500만원	2,000만원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1,500만원	3,000만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1,500만원	2,000만원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3,000만원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 및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별표2]로 정하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2. 물류창고업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2호	-	300만원	400만원
2. 법 제21조의2제3항의 등록기준	법 제21조	-	300만원	600만원

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의 10에서 준 용 하 는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법 제 21조 의 10에서 준 용 하 는 제 17조 제 1 항 제 6호	-	600만원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 및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별표2]로 정하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별표 1의2]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4조제5항 관련)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단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부담률 × 용도별 가중치 ×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업무용도인 경우: 2.6
 -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의9제2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

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생략)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

-----.

②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의9제3항-----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시설부담금) ① ~ ④ (생략)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 국세강제징수-----

---. -----

--.

제34조(시설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표 1의2
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에 존
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
정한다. -----

----- 면제
할 수 있다.

⑥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

⑥ (생략)

<시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
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을 부과해야 하며, 시설부담금
의 납부기한은 법 제36조에 따
른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
공인가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이의신
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

-----.

1의2. (생략)

<신설>

4.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폐
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
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 10. (생략)

10의2. (생략)

11. ~ 15. (생략)

1.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3.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
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
리 여부 통지

<삭제>

4. 법 제21조의10-----
--

5. 법 제21조의10-----
--

2. 법 제21조의9-----
--

6. ~ 9. (현행 제8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10. (현행 제10호의2와 같음)

11. ~ 15.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 8.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시

② ----- 법 제64조 제3항-----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의10-----

3. 법 제21조의10-----

4. 법 제21조의10-----

1의2. 법 제21조의9-----
--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 제1호 및 제2호, 제3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u>제10호</u>(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u>제10호의2</u>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만 해당한다</u>), 제4호 및 제5호, <u>제6호</u>-- <u>제9호</u>----- ----- <u>제10호</u>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4013